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4월 2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24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4. 22.(금)	담당부서	재생에너지보급과
담당과장	이경수 과장(044-203-5380)	담 당 자	임은성 사무관(044-203-5384)

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

- '21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총 3,192억원 지원 -

- 대규모 유휴공간 활용이 가능한 산업단지 및 주택·상가·공공 시설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**4.25(월) 2022년 「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(주택·건물지원 등)」**을 공고하고, **5.9(월)부터 신청접수**를 받는다고 밝혔다.

○ **보급지원**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**자가 소비를 목적**으로 태양광, 지열 등 **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**하는 경우, **설치비의 일부를 지원**하는 사업이며,

○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**설치수요 증가 추세**를 반영하여 **'21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3,192억원**이다.

□ '22년 **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**은 다음과 같다.

① **주택·건물지원 (1,435억원)**

○ 주택·건물지원 사업은 **단독·공동주택, 상가·공장** 등에 **자가 소비 목적**의 **신재생 설비를 설치**하는 경우 **설치비의 일부**를 지원한다.

○ 올해부터는 **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**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**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**을 고려하여, **입주기업**에 대해 **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**이다.

*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대상으로서, 건물지원사업 지원 신청시 가점(+1점) 부여

< 주택·건물지원 사업 주요내용 >

❶ 지원 대상

- 주택지원 : 단독·공동주택,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 일부 지원
- 건물지원 : 상가·공장 등 건물 및 그 부속 시설물에 설치 시 설치비 일부 지원

❷ 신청자 : 주택 및 건물 소유주

❸ 설치비 보조율 : 표준설치비의 50% 이내*

* BIPV 및 연료전지는 70%, 태양열은 용량에 따라 별도산정

❹ 설치용량 한도 : (주택) 단독주택 3.3kW 이하, 공동주택 30kW 이하
(건물) 상가·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

② **융복합지원 (1,757억원)**

○ 융복합지원은 지자체,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**민·관 협력체를 구성**하여 **지역 단위로 보급**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며,

○ **주택·상가·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**에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 두 종류 **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**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○ 특히, 최근 **지자체** 차원의 **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**이 **증가하는 추세**를 **고려**하여 2022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**전년 예산 대비 약 11% 증액, 1,757억원 규모로 확대**된다.

* 융복합지원 예산 추이 : ('20) 1,122억원 → ('21) 1,577억원 → ('22) 1,757억원

○ 융복합지원은 **전년도 신청접수**를 통해 **다음년도에 자금이 지원**되는 사업으로서, 올해는 **2023년도 사업**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**사업을 수행할 지자체**(민·관 협력체)를 **평가하여 선정**할 계획이다.

* 한국에너지공단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 계획

○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·도로 간 **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**를 **평가점수에 반영**하여, 재생에너지 보급에 **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**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.

* 지자체 개발행위 조례 상 이격거리가 작을수록 평가 시 가점을 부여(최대 3점)

< 융복합지원 사업 주요내용 >

❶ 지원 대상

- 융복합지원 : 주택·상가·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하여 지역 단위로 보급

❷ 신청자 : 지방자치단체(또는 공공기관) 주도 협력체

❸ 설치비 보조율 : 표준설치비의 50% 이내

* BIPV 및 연료전지는 70% 이내, 태양열은 용량에 따라 별도산정

□ 산업부는 '22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·건물 옥상 등을 활용하여 **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**될 전망이며,

○ 이에 따라, 상가·건물 등에 **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**과 함께 **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**가 기대된다고 밝히는 한편,

○ 향후에도 건축물 등 **여유공간을 활용**한 **신재생에너지 설비**를 **적극 지원**하여 **환경훼손을 최소화**하면서 **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**하겠다고 밝혔다.

□ 한편,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**한국에너지공단**(신재생에너지센터)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**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**을 위해 **소비자피해 콜센터**(☏1670-4260)를 **연중 운영**하고 있으며,

○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**시공업체에 관한 정보**를 한국에너지공단 **그린홈 홈페이지**(https://greenhome.kemco.or.kr)를 통해 **대국민 공개**하고 있어, 소비자가 **시공업체 선택에 참고**할 수 있도록 **지원**하고 있다.

□ **이번 공고**와 관련된 **보다 자세한 내용**은 **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**(www.motie.go.kr) 또는 **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**(www.knrec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[첨부 1]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(주택지원) 공고문
[첨부 2]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(건물지원) 공고문
[첨부 3]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(융복합지원) 수요조사 공고문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임은성 사무관(☎ 044-203-53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